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의 특례 규정 마련 등〉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29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중재제도의 개관	4
2. 총괄검토	6
3. 조문별 검토의견	10
가. 중재판정부 권한 결정에 관한 예외규정 마련(안 제17조제5항 단서 신설 등)	10
나.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중재판정 공개(안 제19조의2 신설)	15
다. 중재신청금액 증액 요건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17
라. 공공기관등의 중재판정 보고 의무 신설(안 제35조의2 신설)	20
마. 중재판정 취소 사유 추가(안 제3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2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10. 10.
3. 회 부 일 : 2025. 10.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사인 간 중재와 동일한 규율만을 두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재정상 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제한 규정은 부재함.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광주광역시 간의 SRF시설 관련 중재사건에서 당초 78억 원이었던 중재신청금액을 포스코이앤씨가 절차 진행 중 2,100억 원으로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중재합의 당시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의 진행 경과나 판정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민주적 통제와 사후적 책임이 미흡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중재판정부의 권한 다툼이나 청구금액의 과도한 증액 등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여 공공기관이 불리한 조건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할 위험이 존재함.

이에 ① 공공기관 중재사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② 중재신청금액의 과도한 증액을 제한하여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며, ③ 공공기관 사건에 대한 절차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중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4조의2, 제35조의2 및 제36조).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공공기관 등"으로 정의하여 이들 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에 대한 규율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호).

나.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유효성 등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면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 결정하도록 하고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정한 경우 허용하며 권한심사신청 시 중재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 심리 및 중재판정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라. 공공기관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중재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중재신청금액을 증액하려면 ① 증액된 청구가 당초 중재합의의 범위 내에 있을 것, ② 증액된 청구금액이 최초 신청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상대방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마.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의회 및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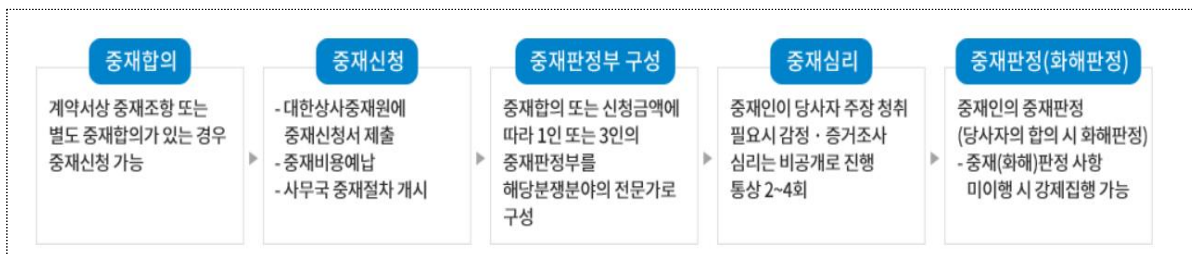
바.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되, 공공기관등이 항고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Ⅲ. 검토의견

1. 중재제도의 개관

- 「중재법」상 ‘중재(仲裁, Arbitration)’는 당사자들간 합의를 전제로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법원을 통하지 않고 단심제로 진행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나라는 1966년에 「중재법」을 제정한 후, 국내외 상사분쟁에서 「중재법」의 보편적 적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하 “「모델중재법」”이라 한다)¹⁾을 전면 수용하여 개정하였음.²⁾
- 「중재법」에 따른 중재제도는 크게 중재합의,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심리, 중재판정 절차로 구분할 수 있음.

<중재 진행 절차>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https://www.kcab.or.kr/main/main.do>)

1) 국제상사중재에 있어 통일적인 법률 해석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만든 중재 모델법규로, 현재 전 세계 93개국 이상이 모델법을 기반으로 자국의 중재법을 운용하고 있음.

2) 1999년 전부개정(법률 제6083호), 2016년 일부개정(법률 제14176호)

-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중재합의 조항을 포함하거나 분쟁 발생 후 별도로 중재합의를 할 수 있으며, 중재합의가 있으면 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피고의 항변에 따라 소가 각하됨.
- 중재인의 수나 선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며, 합의에 의한 중재인 선정이 안 될 경우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게 됨.
 -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이나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판정부 권한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권한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음.
- 중재심리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며, 당사자는 중재절차 진행 중에 신청이나 공격 방어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
- 중재판정으로 중재는 종료되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중재판정에 절차상 하자나 공서양속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음을 당사자가 증명하거나 법원이 직권심사한 경우에 한해 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있음.

2. 총괄검토

-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 중재절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 ①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결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안 제17조제5항 단서 신설 등), ② 중재 심리와 판정을 공개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등을 위한 경우 비공개 혹은 공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 또한, ③ 공공기관등의 상대 당사자에 대한 중재신청금액 증액 요건을 신설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④ 공공기관등의 보고 의무를 신설하며(안 제35조의2 신설), ⑤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을 판정 취소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중재판정부 권한 결정 (안 제17조)	▶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경우 의무적으로 선결문제로 결정 -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중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현행은 재량적으로 선결문제로 결정 ▶ 중재합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법원이 심사하는 동안 중재절

구분	주요내용
	차 정지 ▶예외적으로 법원권한심사에 대해 즉시 항고 가능 -중재신청금액 변경 요건 규정을 위반하여 중재신청금액이 증액된 경우로,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권한 인정 -중재합의 존부·유효성에 관한 판단에 명백한 오류 존재 -중재합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사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권한 인정 ※현행은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해 항고 불가
중재의 공개 (안 제19조의2 신설)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중재는 심리와 판정요지 의무적 공개 ▶국가안보등을 위한 경우 비공개하거나 공개 범위 제한 가능
중재신청금액 변경 (안 제24조의2 신설)	▶중재신청금액 증액 요건 규정 -증액된 청구가 당초 중재합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최초 신청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공공기관등의 충분한 방어 기회 보장
중재의 보고 (안 제35조의2 신설)	▶중재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 주무기관 장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 의무
판정 취소사유 (안 제36조)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과 관련한 취소사유 추가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 -법원의 권한심사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기회 없었던 경우 -중재판정이 공공기관등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초래

□ 현행 「중재법」은 당사자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중재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중재 결과가 국민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중재에서 민간이 중재신청금액을 과

도하게 증액하는 등 공공기관등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례³⁾가 있어 공공기관등을 보호할 수 있는 중재절차를 마련하고, 중재절차의 진행 경과나 판정 결과를 공개하여 민주적 통제와 사후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⁴⁾.

□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중재의 경우 중재절차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공공기관등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우리나라는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전면수용하여 「중재법」을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 운용하여 왔음.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UNCITRAL 「모델중재법」의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국제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중재지로서 기피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 ①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항고할 수 있고, ② 법원의 확정 결정을 받은 사항을 중재판정 취소 사유로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공공기관등을 상대로 하

3) "포스코이앤씨, 시민혈세 노린다" 광주시의회, SRF문제 공개질의 『연합뉴스』, 2025 .7. 30.
<https://www.yna.co.kr/view/AKR20250730082000054>

4)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

는 당사자의 중재금액 변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셋째,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에서 심리 및 중재판정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공개와 기밀성을 원칙으로 하는 중재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정보유출을 우려한 당사자들이 공공기관과의 중재합의를 거부할 여지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5) 법무부는 기업상 비밀이나 전략이 보호되고, 향후 중재절차 관련 기록이 소송기록에 사용될 우려가 없어야 적극적으로 중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기밀성 유지는 중재의 핵심 가치인데, 개정안은 중재의 기밀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따를 경우 중재 과정이 공개될 것을 우려한 당사자들이 공공기관과의 중재합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중재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조문별 검토의견

가. 중재판정부 권한 결정에 관한 예외규정 마련(안 제17조제5항 단서 신설 등)

□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 중재판정부 판정 권한에 대한 결정의 예외를 정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①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이나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결문제로 결정하여야 하고(제5항), ② 권한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중재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제7항), ③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제8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 ④ (생략)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다만,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결문제로 결정하여야

현행	개정안
<신설> ⑨ (생략)	<u>관한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u> 3. <u>중재합의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인정할 경우</u> ⑨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제17조제5항은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 중재합의 존부 또는 유효성,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선결문제로 결정하도록 함

○ 현행법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선결문제로 결정하거나 본안심리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본안심리 전 선결문제로 결정하도록 정함으로써 공공기관등이 관할상 하자 없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 제17조제7항은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법원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중재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중재절차를 정지함으로써 관할준부가 불분명한 본안 심리에 공공기관등의 당사자가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중재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규정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중재판정의 지연으로 지연이자 등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참고로, 「모델중재법」은 중재절차를 중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⁶⁾, 이는 권한심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중재판정의 신속한 진행이라는 중재의 기본 원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 제17조제8항은 당사자가 공공기관등일 경우 법원의 권한심사 결과에 대해 예외적으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 권한심사 결과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정하게 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 권한심사에 대한 결정을 확정지을 수 있어 불필요한 본안 심리로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6) 「모델중재법」 제16조(자신의 관할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권한) ③중재판정부는 본조 제2항의 항변에 관하여 선결문제로서 또는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서 자신의 관할권이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6조에 명시된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항을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이러한 신청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수 있음.

- 다만, 중재의 목적은 법원의 재판과 달리 항고·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단심제로 운영하여 그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자 하는 것임에도, 예외적 항고를 인정할 경우 개정안 제17조제7항에 따라 항고심 심사 동안 중재절차가 재차 정지되어 중재가 더욱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법무부는 개정안 제17조제8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대한 항고를 허용하는 것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중재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중재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중재판정 공개(안 제19조의2 신설)

- 개정안은 ① 중재절차를 비공개로 하되, 당사자간 합의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②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 심리 및 중재판정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하며(제2항), ③ 국가안보, 영업비밀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경우 중재절차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중재절차의 공개) ①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 및 중재판정의 요지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공공기관등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영업비밀보호, 개인정보보호,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하여 공개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 국가안보, 영업비밀보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중재의 심리와 판정 요지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다만, 중재는 기술이나 영업비밀과 관련되는 분쟁이 많고 중재 당사자라는 사실 공개만으로 당사자의 대외 신용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⁷⁾을 고려하여, 공공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과 당사자의 영업비밀·신용보호라는 사익을 구체적으로 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정안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방법·절차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⁸⁾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등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 법무부는 기밀성 유지가 중재의 핵심가치라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공공기관과의 중재합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중재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7)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12조(비공개) ①중재절차 및 중재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59조(비밀유지) ①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 및 그 기록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다.

②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절차 또는 중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의 비밀유지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영업 비밀 및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중재인, 긴급중재인, 중재판정부 보조원(또는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자),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증인, 전문가, 통역인, 자금지원 비당사자, 심판원 및 그 구성원, 국제중재센터 및 그 임직원은, 당사자와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와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8)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다. 중재신청금액 증액 요건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중재신청에서 신청인이 중재신청금액을 증액하려고 할 경우 필요한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① 증액된 청구가 당초 중재합의의 범위 내에 있고 (제1호), ② 증액된 청구금액이 최초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 하며(제2호), ③ 공공기관등이 증액된 청구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제3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공공기관 등의 중재신청금액 변경) 공공기관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중재신청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중재신청금액을 증액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증액된 청구가 당초 중재합의의 범위 내에 있을 것 2. 증액된 청구금액이 최초 신청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다만, 공공기관등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상대방인 공공기관등이 증액된 청구에 대하여 충분히 방 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

□ 현행법은 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자신의 신청이나 공격·방 어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⁹⁾ 중재신청금액

9) 「중재법」 제24조(신청서와 답변서) ③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절차 의 진행 중에 자신의 신청이나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변경 또는 보완에 의하여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중재절차 중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재신청 당시에는 손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중재절차 진행 중에 환율 변동, 이자 누적 등 새로운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한편,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운영되며 중국판정에 대하여는 취소 소송이라는 불복 수단만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재제도는 중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을 반영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등을 당사자로 하는 중재에서 민간 당사자가 중재신청금액을 과도하게 증액하는 사례가 있어,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 중재신청금액의 증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정 변경으로 인해 중재신청금액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요건 미충족으로 정확한 손해액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잔여 손해액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절차로 이행할 소지가 있어,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중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법무부는 개정안과 같이 청구금액 확장을 제한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청구금액 확장이 제한됨에 따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일회적 분쟁 해결이라는 중재의 목적에 반하고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액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공공기관등의 중재판정 보고 의무 신설(안 제35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이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보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①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제1항), ② 보고 내용에 중재신청금액 및 그 변경 경위, 판정금액 및 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제2항), ③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제3항), ④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및 징계 등의 조치대상으로 함(제4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공공기관 등 사건 판정의 보고) ①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재사건의 당사자, 분쟁의 대상, 중재신청금액 및 그 변경

현	행	개	정	안
				<u>경위</u> 2. <u>중재절차의 진행 경과</u> 3. <u>판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u> 4. <u>판정금액 및 그 재원 조달 방안</u>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및 징계 등의 조치 대상이 된다.

-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에게 중재관련 보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의회나 주무관청등이 중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중재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중재절차와 판정에 관한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¹⁰⁾, 공공기관등이 지방의회·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중재와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12조(비공개) ①중재절차 및 중재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59조(비밀유지) ①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 및 그 기록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다.

②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절차 또는 중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의 비밀유지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영업 비밀 및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중재인, 긴급중재인, 중재판정부 보조원(또는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자),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증인, 전문가, 통역인, 자금지원 비당사자, 심판원 및 그 구성원, 국제중재센터 및 그 임직원은, 당사자와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와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정보 보안) ①당사자들은 중재와 관련하여 공유, 저장 또는 처리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마. 중재판정 취소 사유 추가(안 제3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 개정안은 중재판정부 권한에 대한 법원의 확정결정을 중재판정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2항), 공공기관등이 항고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결정을 중재판정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제3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생략)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2. (생략) <신설>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제17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결정을 받은 사항은 다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1.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제17조제8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항고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1. 제17조제6항에 따른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을 것 2. 공공기관등이 제17조제6항의 권한

③ · ④ (생략)	<u>심사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을 것</u> <u>3. 중재판정이 공공기관등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u>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 현행법¹¹⁾은 중재판정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권한심사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취소 소송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에서 법원의 권한심사 등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져 항고할 수 없었던 사항임에도, 이를 사유로

11)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 다만, 중재판정의 권한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한하고 있고¹²⁾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법원의 확정결정을 중재판정 취소 사유로 인정할 경우, 이미 확정된 법원의 결정을 다시 다투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재의 신속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외국과의 분쟁에서 외국 당사자가 우리나라 중재법에 따라 중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재법이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법적 보편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¹³⁾ 개정안은 국제적 기준인 「모델중재법」과 달리 당사자가 공공기관등인 경우에 한해 별도의 중재판정 불복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공공기관등을 상대로 하는 외국 당사자가 우리나라 중재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중재받는 것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법무부**는 개정안의 내용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중재의 취지

12) 「중재법」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⑧ 제6항에 따른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13) 1999년과 2016년에 「모델중재법」을 전면수용하여 「중재법」을 개정한 이유임

◦ 1999년 「중재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야기되는 국내외 상사분쟁을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현행중재법은 다양한 유형의 국내외 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과 선진입법예를 적극 수용하여 우리중재법이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는 준거법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우리 중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중재제도의 발전과 그 이용의 확산을 도모하여야는 것임.

◦ 2016년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중재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 대상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함으로써 중재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에 반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중재에서 공공기관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73